

갱신계약 보장내용 변경시 안내 제도성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 이라 합니다)은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이 법령 및 표준약관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적용됩니다.(단,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합니다.)

보통약관이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 또는 자동갱신되는 특별약관이 부가된 보험계약

제2조 (특별약관의 적용)

- ① 회사는 자동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이 경우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단, 계약의 보통약관 및 해당보장 특별약관에서 다른 기간을 정하였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약관 변경내역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자동으로 갱신되며, 계약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전 계약은 만료됩니다.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형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갱신일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해드립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보장 특별약관을 따릅니다.